이재영(초선의원 시절 비서) 1차 구술

1. **구술자**: 이재영
2. **면담자**: 박보영
3. **촬영자**: 권용협
4. **구술일자**: 2011년 10월 18일
5. **구술장소**: 경기 안산시 상록구 경기테크노파크
6. **구술분량**: 06분 17초 / 일부 공개
7. **주요내용**: 첫 노동사건 변론 '세화상사 노조탄압[1)]'

구술자 : 우리가 해고되고 인제 이 난리가 나면서 인제 만났는데, (노무현 변호사가) '그 왜 노조 결성했나' 이래서 인제 '아니 노동법 자체가, 근로기준법도 안 지키고 너무 이렇게 우리 열악하고…' 그 당시 내 월급이 이제 우린 토요일까지 기본 잔업을 하고 일요일 두 번 정도는 특근을 하고 기본상 잔업은 기본 잔업 두 시간에다가 항상 인제 뭐 잔업할 때 되면 좀 더 하고, 연근(연장근무)할 때는 또 토요일 날 당연히 연근하고 하여튼 이렇게 했는데. 내가 (시급)천팔백(1,800), 천팔백(1,800) 얼만가 그랬어. 그래가지고 하여튼 한 달 해갖고 열심히 해갖고 연근, 특근 한 번도 안 빠지고 그 철야 같은 거 다 해갖고 하면은 하여튼 뭐 (월급)구만팔천(98,000)원 가까이 이래 받았어요. 하여튼 나는 남자니까 조금 약간 높은 편이었고. 여자들은 조금 더 인제 좀 더 작고. 그러니까 노조 결성 안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근데 인제 거기에 이야기를 쭉 들으시더니 '에이, 그럴 리가 있나. 그 현장이 임마, 사람 사는 덴데 무슨 그런 이야기를 하나', '아니 진짜입니다' 그래가지고 진짜라고 이야기하면서 설득하느라고 인제 많이 만나서, 자주 만나서 자주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인제 (노 변호사가) 노동 사건을 처음 맡아봅니다, 그때는 그래갖고 말을 들어도 못 알아듣고 법도 그런 게 있는지 잘 모르시고. 우리는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게 어떻

1) 부산 사상공단의 중소기업 세화상사는 1985월 2월 1일 노동조합을 결성했으나 사측의 방해로 대량 해고자가 발생했다. 노동자들은 노무현 변호사를 찾아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일련의 소송을 걸고 복직투쟁을 벌였다. 이 과정에 사측은 블랙리스트를 작성하여 공단 내 재취업을 방해하는 한편 최종 폐업신고 처리 협박 등으로 강경하게 맞섰다. 노무현 변호사가 수임한 최초의 노동사건으로, 비슷한 시기 부산의 삼도물산과 창원 통일중공업 노조 탄압에 의한 구속사건이 불거지자 노무현법률사무소 내에 노동법률상담소를 설치하여 노동자들의 지원 활동을 시작한다. 부산민주운동사편찬위원회, <부산민주운동사 3>, 1998, 483~484쪽 참고.

게 적용되는지 잘 몰라도 법은 인제 많이 알죠.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우리 '노동법 해설' 그거 갖고 딸딸딸 이제 뭐 외웠을 때니까. 그 소송법은 몰라도 노동법은 잘 아는데 이분은 소송법은 잘 아는데 어째 노동법은 전혀 모르시더라고. 그래갖고는 인제 그 같이 이야기하면서 인제 '요거는 요 조항에서 이렇게 되고' 뭐 그런 거 이야기한다고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전혀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 그래서 설득하다 싸우기도 싸우고 막 많이 했죠. 그전에 인제 그 노동법을 봤던, 나중에 인제 실토를 하시는 데 그 친구들, 사업하는 친구들 고등학교 동기들 중에서 사업하는 친구들이 인제 월급을 좀 무슨 수당, 무슨 수당 이런 걸 좀 안 주기 위해서 '이거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나' 요렇게 물어갖고 그거 때문에 몇 번 봤다 그러더라고.

이쪽(세화상사)은 부당해고가 문제가 아니고 노동조합 결성의 문제가, 문제가 되니까 노조 결성의 단결권 문제 이 문제가 인제 처음 해보는 거죠. 유일한 거였습니다, 인제. 그 당시 일도 거의 유일했습니다, 노동조합 결성 문제는. 그러니까 단순히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법적인 대응 이런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부당해고 문제도 근로기준법 위반 문제니까. 근데 인제 노동조합법 상으로도 부당해고의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제 노동조합법으로 가는 부당해고의 문제, 부당정직 문제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이게 법률적으로, 이제 본인이 해줄 수 있는 거는 법률적인 대응밖에 없다고 하시면서 이제 어쨌든 '잘 모르니까 공부를 좀 해봐야겠다' 그래서 '우리가 돈이 없습니다' 하니까 '그건, 돈은 뭐 됐고. 그래 그건 뭐' 이러면서 (사건을 맡았습니다).

인제 노동부에 우리가 부당해고나 정직이나 이렇게 해서 진정서를 넣은 거는 우리 명의로 넣었고 그 외에 노동위원회에,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내는 거 그 다음에 법원에 해고 무효소송 그 다음에 해고 무효소송 전에 그 임금지급 가처분신청, 부당해고 효력중지 가처분신청 하여튼 이름도 괴상망측한 그런 가처분신청들을 책에서 어디 봐갖고 될 만한 거는 소송을 다 걸었다 그럽니다.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런 거. 뭐 도장을 그 변호사 사무실에서 파가(파서) 쓰니까. 하여튼 공부하고 싶은 대로 다 했다 그럽디다, 그때. 그러면서 노동조합 관계의, 노조의 결성과 관련돼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은 그때 공부를 다 하셨어요. 다루는 사례가 없어서 공부를 할 수가 없잖아요. 판사도 모르고. 이런 사건들은 그때는 판사들도 잘 모르고 하니까 변호사가 이렇다 하면 '아, 그런가'

이러고 또 이제 넘어가고 할 때니까.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이길 때니까. 노 변호사님이 하여튼 그 우리 사건을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때 인제 우리 해고된 애들이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고향 떠나서 다 혼자 나와서 이제 있는 처녀들이, 결혼한 것도 아니고 다 젊은 처자들인데. 그러니까 뭐 방세 나올 구멍도 없고 이제 그러니까 블랙리스트(Blacklist)가 되니까 인제 취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서로 '어찌하노' 그래갖고 인제 어떻게 돈을 그래 모았는지 하여튼 막 이렇게, 막 진짜 볼펜 팔고 이래서 모았는지 하여튼 모아가지고서는 가야(동)에다가 저기 허름한 판자집을, 막 방을 몇 개나 되는 거를 세를 냈어요 인제. 그래갖고는 그 집에 인제 몇 번 오셨어요. 사모님을 데리고. 그래갖고 우리 저 해고된 세화상사 애들하고는 친해요. 그러니까 인제 전부 다 돈들이 없이 있는 거 아니까 오면 그 동네 그 가야공원 그 밑에 보면은 뭐 이래 납새미(가자미) 구워 팔기도 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 데 가서 인제 막걸리 한 잔 시켜놔 놓고 우리는 막걸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 먹으면 하여튼 특식이니까 이제. 그 막 사주시고.

그러고 인제 회사 사장을 만나러 가가지고 막 타협도 해주시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처음 해보니까 자기도 되게 말이 안 되는 짓을 회사가 하고 있다고, 당신들 그러면 되냐고 아예 막 변호사로서 입장이 아니고 가갖고 막 이러면 되냐고 막 싸우고 대화하고 '어쩌면 되겠노, 우리 협의하고 애들 복직해주고 정리하자' 하여튼 그런 것도 하고 그랬었어요. 우리 사는 데 자주 오셨었어요.

■ **구술자 주요이력**

1961. 부산 출생

1979. 부산상업고등학교 졸업

1979. 연세대학교 상경대 경영학과 입학

1985. 부산 북구 소재 '세화상사' 노조 총무부장 역임, 해고

1987.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부산본부 노동문제대책특별위원회 대표간사

1988. 부산노동문제연구소(소장 노무현 변호사) 대표간사

1988. - 1990. 국회의원 노무현 비서

1990. - 1993. 노무현 문재인 합동법률사무소 내 노동법률상담소 근무
2002.12 - 2003.02 제16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회분과 전문위원
2003. 국무조정실 산하 외국인력 제도개선 기획단 총괄반 담당위원

부산상고 후배로 학창시절 동문 선배 자격으로 특강을 온 노무현 변호사를 본 적이 있다. 1985년 3월 당시 노 변호사가 맡은 최초의 노동사건인 '세화상사' 노조 해고자로 다시 만났다. 그렇게 시작된 인연으로 정치 입문 이후 출마 때마다 선거운동을 도왔다. 초선의원 시절에는 노동문제 담당 비서로 상임위 활동을 보좌했으며 제16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회분과 전문위원을 역임했다.